

#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59호
----------	--------

제출년월일 2025. 9.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김포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법적인 근거 확보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총칙(안 제1장)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안 제1조~제6조)
-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제2장)
  - 진흥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 등 (안 제7조~제11조)
-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안 제3장)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22조)
- 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안 제4장)
  - 전담부서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협의 등(안 제23조~제25조)
- 마.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안 제5장)
  - 관계기관의 협력 등, 교육 및 홍보 등(안 제26조~제28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6. 18. ~ 7. 8.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붙임)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나) 경 기 도 : 도시주택실 건축정책과

##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할 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

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김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3장 공공디자인 위원회

제12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김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 및 담당부서 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및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4.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복구)가 필요한 경우
5. 설계·시공 일괄입찰(일괄 도입 방식)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6. 조성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기존 심의·자문대상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라.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성·자질·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8조(심의신청 시기)** 심의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공공디자인의 협의)** 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등의 대상이 되는 별표 1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시의회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김포시 교육지원청, 경기남부경찰청, 김포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

제26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8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도시디자인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도시디자인과 김 재 성
	담 당 성 명	도시디자인팀장 장 민 수
	담 당 자 전 화	지방시설주사보 문 유 진(☎5204)

[별표 1]

공공시설물 등의 심의·협의 대상(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심의 대상 : 신설 공사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2. 협의 대상 : 신설 공사 총 사업비 1억원 미만

[ 사회기반시설 ]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로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배수구 덮개, 맨홀 타. 제설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 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등
하천시설물	가. 수위차단시설(육갑문) 등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등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 기타 공공시설물 ]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가.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등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등
가로편의시설	가. 벤치 나. 파고라 다. 그늘막 라. 음수대 등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등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방호울타리 카. 횡단보도 쉼터 등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현수막 게시대·지정벽보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 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마.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 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시각매체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서체 등), 문양 등
기 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 등

## [별표 2]

###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제12조 관련)

다음 각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구분	세부항목
인구 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 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 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 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구분	세부항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구분	세부항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

사업부서	부서명(팀)			
	담당자	행정번호		
사업명			접수번호	도시디자인팀 작성
사업개요				
추진일정				
디자인계획 (사업대상지 현황, 조감도, 도면, 제품사진 등)				
	※ 별첨 가능			
부서의견 (디자인검토에 참고할 사항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2.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김포시 경관조례 제2조제7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김포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디자인업무의 협의)** ① 공공기관에서는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개별시설물 설치 시
2. 공공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
4.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8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역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시의원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조성,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공원 조성 등)
4.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 시기는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김포시 공공디자인 표준 디자인, 서울시·경기도 우수 디자인 인증제를 사용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수당)** 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②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

공공시설물 심의 대상 시설물

대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공간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
도시기반 시설물	교량, 보도육교, 생태통로,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용벽 및 석축(높이 2미터 이상), 주차장(지하포함), 도시철도 관련 내·외부 시설물 등
시설물	가로등/보행유도등/보안등/공원등(제어함, 분배전함),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신호등(제어함, 분배전함), 블라드, 벤치, 펜스, 휴지통, 가로화분대, 수목보호대, 환기구, 현수막 게시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자전거거치대, 가로판매대, 맨홀, 배수구 덮개, CCTV, 사인시설물, 지상기기, 방음벽, 방호울타리, 횡단방지시설 등
공공매체	종합유도표지, 지역안내표지, 시설명칭표지, 방향유도표지, 위치안내표지, 공원안내표지, 디지털영상매체, 행정서식, 홍보매체, 인쇄매체, 각종 안내사인 등
공공미술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김포시에서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 도시기반시설물, 시설물, 공공매체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개성 존중을 통한 폭넓은 참여 중시
3.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환경 고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 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공공시설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설치된“김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제6조제1호 관련)

대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공간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건축	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연수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의료시설, 복지시설, 체육관,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관제센터, 터미널, 상하수도시설, 공중화장실 등
도시기반 시설물	교량, 보도육교, 생태통로,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옹벽 및 석축(높이 2미터 이상), 주차장(지하포함), 도시철도 관련 내·외부 시설물 등
시설물	가로등/보행유도등/보안등/공원등(제어함, 분·배전함),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신호등(제어함, 분·배전함), 블라드, 벤치, 펜스, 휴지통, 가로화분대, 수목보호대, 환기구, 현수막 게시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자전거거치대, 가로판매대, 맨홀, 배수구 덮개, CCTV, 사인시설물, 지상기기, 방음벽, 방호울타리, 횡단방지시설 등
공공매체	종합유도표지, 지역안내표지, 시설명칭표지, 방향유도표지, 위치안내표지, 공원안내표지, 디지털영상매체, 행정서식, 홍보매체, 인쇄매체, 각종 안내사인 등

##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를 비롯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시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 등)**

-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김포시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정비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 및 개발사업
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제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지역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 자치법규명 :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8. ~ 7. 8.(20일간)
-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연 번	의견 제시자			제출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	수용 여부
	접수일	접수 방법	제출자 (단체명)		
1	25.6.26.	메일	박○숙	제출의견	미수용
				주관부서 의견	

○ 제2조(정의)의 ‘모든 주민’에는 성소수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위한 조례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에 위반되는 조례안이라 제정이 철회되어야 함

○ 본 조례는 화장실 설치를 위한 조례가 아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관련이 없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안 및 '20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등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1626(2020. 5. 22.)호와 관련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 현장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 품질을 제고하고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과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를 개발하여 자료를 배포하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https://publicdesign.kr)을 통해서도 자료 확인 가능

**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 **(목적)** 공공디자인 관련 각 조례별\* 운영되고 있는 기본계획, 위원회 등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공공디자인 + 범용(유니버설)디자인 + 범죄예방디자인
- **(내용)**  
- (권장형) 3개 조례를 하나의 장으로 통합한 융합형  
- (일반형) 3개 조례를 각 장으로 구분한 나열형
- **(적용)** 동 조례(안)은 참고사항이니, 지자체 실정에 맞춰 통합 대상 조례 및 형태를 선택, 탄력적으로 운영  
※ 동 조례(안) 배포를 계기로 반드시 개정할 필요는 없으며, 지자체 수요에 맞게 적용

**나.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 **(목적)** 업무별 처리절차 및 항목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내용)**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절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사항, 용역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 등

- 아울러, 2020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함께 배포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시행계획의 사업 내용은 코로나 19 피해 및 추경 감액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1부  
2.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1부  
3. 2020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인**

수신자 수원시장(도시디자인단장), 고양시장(건축디자인과장), 용인시장(도시디자인과장), 성남시장(건축과장), 부천시장(건축관리과장), 화성시장(도시디자인과장), 안산시장(건축디자인과장), 남양주시장(도시정책과장), 안양시장(도시재생과장), 평택시장(도시계획과장), 시흥시장(도시디자인과장), 파주시장(도시개발과장), 의정부시장(건축디자인과장), 김포시장(도시계획과장), 광주시장(도시재생담당관), 광명시장(주택과장), 군포시장(도시재생과장), 하남시장(도시계획과장), 오산시장(건축과장), 양주시장(도시계획과장), 이천시장(주택과장), 구리시장(도시계획과장), 안성시장(도시개발과장), 포천시장(친환경도시재생과장), 의왕시장(건축과장), 양평군수(건축과장), 여주시장(도시계획과장), 동두천시장(기획감사담당관), 가평군수(도시과장), 과천시장(도시정책과장), 연천군수(도시주택과장)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b>김승기</b>	공공디자인팀 <b>재원서</b>	건축디자인과 2020. 5. 26. <b>장 승례</b>
협조자		
시행	건축디자인과-8195 (2020. 5. 26.)	접수 도시계획과-15291 (2020. 5. 26.)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제2별관 701호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2787	팩스번호 031-8008-2754 / sk2837@gg.go.kr	/ 대한민국 공개

행복한 일차라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견장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시·도 / 시·군·구(이하 "시·도 / 시·군·구"라 한다)가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도 / 시·군·구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재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도 / 시·군·구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 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
  -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책무)**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 / 시·군·구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오픈터, 조명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도 / 시·군·구보(이하 "관보"라 한다) 및 시·도 / 시·군·구청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 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 제4호의 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또는 부시장·부지사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규정)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

또는 담당 과장 등 지자체 실정에 맞추어 규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시·도 / 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명

나.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과장(또는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

**제19조(심의신청 시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절차)**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도 / 시·군·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민단체·전문가·구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 /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등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관보 및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표창)**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도 / 시·군·구 도시디자인 조례」,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도 / 시·군·구 도시디자인 조례」,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디자인위원회로 본다.

**제5조(디자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6조(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도 / 시·군·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시·도 / 시·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에 따라 수립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시·도 / 시·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sup>2)</sup> (제12조제1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재설시설
도시 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 2. 기타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 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 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 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 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 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청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첨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팽창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용대상) 및 임괄입찰·대안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단,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00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제12조제1항제4호 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진,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범용디자인**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	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